

의안번호	2205836
의 퇴 인	김건의원
회 답 일	2024.12.19.
추계번호	24D4523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비고
1	안 제17조의3(영농 정착지원)제1항	통일부장관은 영농(營農)[영어(營漁), 영림(營林) 포함]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교육 훈련, 농업·어업·임업 현장 실습, 영농 자금 지원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3(영농 정착지원)제1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영농 정착지원(안 제17조의3제1항)

- 개정안에 따라 영농 외에 영어 및 영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, 현장 실습, 자금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어 및 영림 등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에 따라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교육 훈련, 농업 현장 실습, 영농 자금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관련 예산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'영농희망자 육성 사업'에 2억 5,300만원, '영농경쟁력 제고 및 기반조성 사업'에 6억 1,800만원 등 총 8억 7,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[표] 최근 5년간 영농 정착지원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
영농교육훈련	43	26	57	33	32
농업현장실습	19	25	16	23	29
영농자금지원	27	28	35	45	39
합 계	89	79	108	101	100

주: 1. 영농교육훈련은 영림·영어교육훈련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

2. 영농자금지원 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지원 대상자 수이며 임업·어업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음

자료: 통일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영어 및 영림 현장실습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「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경제활동 탈북민 중 1.4%(약 261명)가 농업·어업·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, 통일부에 따르면 정착지원자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·임업 종사 지원자의 수가 미미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